

제 호

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

기관명:

소재지:

대표자:

교육훈련 과정명:

조건: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9제3항에 따라
위와 같이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직인

